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0. 3.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교류 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 2021년 시행 ... 1](#)
- ☐ [유엔난민기구, NBC 뉴스 보도 이후 부패 조사 재개 4](#)
- ☐ [에릭슨 미 당국의 부패 조사에 대한 합의금으로 10억불 이상 지급 예정 ... 9](#)
- ☐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확보 11](#)
- ☐ [베트남 법원, 모비폰 부패 스캔들로 전직 장관에 종신형 선고 ... 14](#)
- ☐ [부패, 값비싼 '숨겨진' 관세 16](#)

II 국제회의 동향

- ☐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20](#)
- ☐ [2019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및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 22](#)
- ☐ [2019년 제2차 청렴작업반회의 24](#)
- ☐ [제16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25](#)
- ☐ [2019년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27](#)
- ☐ [2019년 제4차 뇌물방지작업반회의 29](#)
- ☐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31](#)

III 옴부즈만 소식

-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공정성 주간' 오늘 시작 33](#)
- ☐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조사 결과 나이아가라 지역 최고행정책임자 채용에 '내부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35](#)
- ☐ [캐나다: 토론토시, 위험한 개 처리 방법 개선 39](#)
- ☐ [유럽연합: 유럽의회, 에밀리 오라일리 현 유럽 옴부즈만 재선임 ... 41](#)
- ☐ [영국: 심장 기형 영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 43](#)

IV 참고자료

-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관련 참고자료 46](#)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 2021년 시행

(Council of the EU, 2019.10.7)

유럽연합은 공익신고 채널 신설, 신고자 유형 및 적용 분야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유럽연합은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자금세탁, 제품 및 교통안전, 원자력 안전, 공공 보건, 소비자 및 정보 보호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부문 전반에 있어서 공익신고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 이사회는 오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를 통해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에 대한 안전한 신고 경로의 신설이 요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제공되며 정부 당국은 공익신고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공직자를 교육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이번 새로운 규정은 이미 공식 승인되었으며 관보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년 기한 내 이를 자국법에 적용하게 된다.
- 핀란드의 안나 마야 헨릭슨(Anna-Maja Henriksson) 법무장관은 ‘유럽 연합은 법치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공익신고자들을 위하여 유럽연합 전역에서 강력한 신고자 보호를 제공하는 노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누구도 불법행위의 신고로 인해 자신의 명예나 직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사내/공공기관 내 신고 채널 신설: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주민 수 1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채널을 신설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 문화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 ▶ 신고 채널의 위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될 외부적 신고 채널을 이용하기 전에 공익신고자들은 우선적으로 소속기관의 내부 신고 채널을 이용할 것이 장려된다. 공익신고자가 먼저 외부 신고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적용된다.
- ▶ 새로운 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고자 보호: 이번 규정에 따라 보호 받는 공익신고자에는 업무 관련 환경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자원봉사자, 교육생, 비상임 이사, 주주 등 다양한 유형의 피고용인이 포함된다.
- ▶ 폭넓은 적용: 이번 규정은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자금세탁 방지, 공공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법적인 명확성을 위하여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럽연합 법령의 목록이 해당 지침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에 대해서도 이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조치: 신설 규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직, 좌천, 위협 등의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신고자를 돕는 동료나 친척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해당 지침에는 공익신고자를 위하여 도입될 지원 조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 당국 및 기업의 응답 의무: 신설 규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응답 및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신고 채널을 통한 공익 신고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도입 배경

-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업무 환경 내에서 예를 들어 환경이나 공공 보건, 소비자 안전, 또는 공공 재정 등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다소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유럽연합 내 10개국만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관련 법령은 제한적인 부문에만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서비스 분야에 한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의뢰한 2017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흡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로 인하여 유럽연합 전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이 공공조달 부문에서만 매년 58억(7조7천억 원) ~ 96억 유로(1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기사 : Better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new EU-wide rules to kick in in 2021
(2019.10.7, Council of the EU)

유엔난민기구, NBC 뉴스 보도 이후 부패 조사 재개 (NBC, 2019.11.24)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우간다 내 난민들의 병원 진료부터 정착을 위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뇌물을 요구했다는 NBC 보도 이후,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부패 의혹을 조사했으나 난민들은 증언으로 인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 NBC 뉴스는 유엔 산하 난민 기관인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의료 및 미국 내 재정착 등 모든 것에 대하여 뇌물을 원했다고 우간다 내 난민들의 진술 내용을 보도했다.
- NBC 뉴스의 탐사보도 이후 유엔은 우간다 난민촌의 난민들이 제기한 난민촌 직원의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으나 피해자들은 증언으로 인한 보복 위험에 직면해 있고 유엔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NBC 뉴스와 뉴스 사이트 '100명의 기자들'(100Reporters), '투명성을 위한 기자들'(Journalists for Transparency)의 공동 보도에 의하면, 우간다 남서부 나키발레(Nakivale) 난민촌 난민들은 유엔 산하 난민 기관인 유엔난민기구의 직원들과 계약업체뿐만 아니라 경찰, 우간다 정부의 총리실 직원 등 모든 난민지원 관련자들이 병원 진료부터 유럽 또는 미국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뇌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지난 봄 광범위한 탐사보도 결과 동아프리카 지역 내 난민 수십 명이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계약업체가 난민을 착취하고 부패 혐의를 숨겼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번 보도는 그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 인터뷰에 응한 난민들은 음식과 의료, 안전을 위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유엔난민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를 목격해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은 문제의 보도 당시 부패 의혹을 부인했으나 현재 관련자들이 나키발레 난민촌 및 기타 지역의 난민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 유엔난민기구의 세실 푸일리(Cecile Pouily) 대변인은 지난 10월 이메일을 통하여 문제의 보도 시리즈 이후 제네바 소재의 유엔난민기구 감사관실이 나키발레에서 부패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판결보다는 정책의 문제이며, 난민촌 내 부패 문제에 대한 이전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근거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 현재까지 약 25명의 증인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된 가운데, 푸일리 대변인은 ‘감사관실로 제공된 정보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풍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모든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유엔난민기구는 유엔 조사관들이 증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증인들을 나키발레에서 약 321km 떨어진 엔테베로 보냈다.
- 일부 증인들은 엔테베에 도착한 이후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증인들은 인터뷰 자체는 정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신변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쿵고 출신 난민 한 명은 조사관들이 자신이 목격한 부패 사례의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주로 어떻게 기자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뷰를 마칠 때쯤 조사관들은 자신의 증언이 틀렸음을 입증할 방법을 찾거나 자신이 신고한 부패 문제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이 난민은 ‘조사가 아니라 위협처럼 느껴졌으며, 지금은 우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여기에서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푸일리 대변인은 11월 이메일을 통해 ‘일부 난민들에게는 조사관의 인터뷰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인터뷰의 분위기가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른 난민들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다. 모든 인터뷰는 경험이 많은 전문 조사관들이 우리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고, 모두 녹음되었다’고 말했다.
- 푸일리 대변인은 난민에 대한 보복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난민 9명은 문제의 인터뷰 이후 보복에 직면했으며 보호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모두는 다시는 기자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난민들은 공격, 괴롭힘, 다른 난민들의 따돌림 등의 보복을 겪었다고 말했다.
- 증인 두 명은 유엔난민기구와 연관된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난민 지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다른 한 명은 우간다 정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난민촌 내 우간다 정부 소속 관료에게 불려가 유엔난민기구 직원 앞에서 뇌물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던 증언을 똑같이 반복하여 말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몇몇 난민들은 자신의 가족들 역시 협박을 받아서 현재 가족에 대한 공격 우려 때문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난민 한 명은 ‘나는 현재 숨어 지내고 있으며 밤에 내 집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내 가족들은 공격 위협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났고, 살해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난민은 나키발레의 유엔난민기구 직원을 가리켜 ‘우리가 고발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난민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 다수의 난민들은 이번 보도를 위해 기자를 처음 만나기 2년 전인 2016년

나키발레의 유엔난민기구 부패를 신고하기로 최초로 결심한 이후로 증언과 그에 따른 보복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격의 표적이 될 우려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증인 한 명은 ‘우리는 말썽꾼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제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침묵을 지킨 다른 난민들은 실제로 잘 지내고 있다.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고발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 다른 난민 증인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입을 다물고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나서서 잘못을 고발하면 다른 모든 난민을 위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른 난민은 유엔의 조사가 재개된 이후로 더 많은 뇌물을 요구받았으며, 난민촌 내 구호 관련자들의 난민 착취와 권력 남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엔난민기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담은 포스터와 지지 캠페인 등을 통하여 난민들이 부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가 부패 척결 및 부정적인 결과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체계도 없이 자신들에게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증인 중 한 명은 그 예로 기자에게 감사관실 조사관 중 한 명이 발송한 왓츠앱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자신이 증언한 지역의 유엔난민기구 난민 보호 담당자와 경찰관이 난민 안전의 책임자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 그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따라서 도망갈 곳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가 최근 미국 내 난민 정착지에 수용할 난민의 수를 대거 줄이

겠다고 발표한 이후, 난민들은 부패의 목격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서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미국에 수용할 난민의 수를 1만8천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증인들은 유엔난민기기구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들이 자신들의 메시지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7월에 본 기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유엔난민기기구 감사관실 대변인은 유엔난민기구가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실체적 증거를 모으기 위한 노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행했을 수 있는 모든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난민 증인들은 ‘그들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들은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일도 전혀 없다.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 있다’며, 이메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우간다에는 1백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존재하며, 이들 중 대다수는 남수단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와 같은 국가에서 전쟁이나 독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지난 5월 유엔난민기구와 우간다 정부는 난민 지원 사업 운영 자금으로 9억2천7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요청한 바 있다.

※ 원문기사 : U.N. refugee organization reopens corruption probe after NBC News report (2019.11.24, NBC)

에릭슨 미 당국의 부패 조사에 대한 합의금으로 10억불 이상 지급 예정 (REUTERS, 2019.12.6)

스웨덴 이동통신회사 에릭슨은 시장 확보와 영업 유지를 위해 수년간 중국, 베트남 등에 뇌물을 제공하여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합의금으로 10억불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 스웨덴의 이동통신회사 에릭슨(Ericsson)이 정부 관료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의 부패 혐의 조사 합의금으로 10억 달러(1조 2천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다.
- 미 법무부에 따르면 에릭슨은 수년간 중국, 베트남, 지부티 등의 나라에서 뇌물을 제공해 왔다. 합의금 총액은 5억2천만 달러(6,200억 원) 이상의 벌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급하게 될 5억4천만 달러(6,400억 원)의 합의금을 포함하고 있다.
- 미 법무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릭슨사가 합리적인 내부 회계 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장부 및 기록을 조작하는 계획에 연루되었고, 이로써 적어도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을 타인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에릭슨의 CEO 보르예 에크홀름(Borje Ekholm)은 ‘우리 회사가 진출해 있는 시장 일부에서 각 지역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몇몇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역사에 치욕스러운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미 당국에 따르면 에릭슨은 시장 확보와 영업 유지를 위해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데 제3자를 동원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소 내용을 보면, 에릭슨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제3자에게 자금을 이체했다.

- 에릭슨의 자회사 중 하나인 에릭슨 이집트 유한책임회사는 ‘해외부패 방지법(FCPA)’의 뇌물방지 조항 위반을 공모한 혐의에 대하여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에릭슨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에릭슨은 영업의 지속을 위하여 처벌의 면제를 위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소속의 조프리 버만(Geoffrey Berman) 검사는 성명서에서 ‘에릭슨은 비자금과 뇌물, 선물과 금품 등을 통하여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하에 통신 영업을 해 왔다’고 말했다.
- 에릭슨 측은 자사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재검토했으며 윤리·준법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그 이전에 에릭슨은 미 당국에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12억 달러(1조 4천억 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에릭슨의 최고재무책임자 칼 멀랜더(Carl Mellander)는 지난 3분기의 회사 준비금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 목표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 멀랜더는 또한 ‘오늘 합의를 위한 금액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회사가용금액 범위 내에서 관련 현금 유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Ericsson to pay over \$1 billion to resolve U.S. corruption probes (2019.12.6, REUTERS)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확보 (UNDP, 2019.12.6)

차세대 반부패 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 영역은 지속가능개발(SDGs)16, 기술혁신, 기업의 청렴성, 사회적 책임이다.

- 국제 반부패의 날은 지금까지의 반부패 성과를 기리고 교훈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의 반부패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된다.
- 지난 수년간의 무관심과 냉소, 부정 끝에 마침내 부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금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반부패는 이제 오늘날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개발 의제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로부터 아프리카 연합의 ‘아프리카의 변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길’,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개발 비전에 이르기까지 부패는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되고 반부패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
- 유엔반부패협약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준됨에 따라 (2018년 6월 26일 기준 186 당사국) 더 강력한 법과 전략을 채택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 데이터 공개 정책, 정보 및 기타 법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투명성 운동에 힘입어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지지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우리는 이제 부패 수준 측정 방법, 보건이나 교육 등의 부문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 이행 관련 부패 위험 평가 방법 및 효과 유무 평가를 위한 더 나은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에 대해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있는 부패

- ‘인터내셔널 아이디어’의 ‘2019년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43%에서 여전히 심각한 부패 문제로 인하여 인간

개발이 저해되고 있으며, 실제로 글로벌 부패 수준이 1975년 당시보다 오늘날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16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대부분에서 진보보다는 상당한 저하를 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다수의 국가에서 현행 반부패 법·정책·제도와 그 실효성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금융 흐름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나 민간·공공부문 양 쪽에서 수익 소유권이나 윤리 및 준법의 투명성 확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다음 단계

- 지난 10년간 지속해왔던 우리의 반부패 노력에 근거하여 우리의 개발 파트너 및 모든 반부패 개발 공동체들과 함께 ‘차세대 반부패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4대 핵심 영역을 확인했는데, ‘지속가능개발목표 16(SDG16)과 반부패, 기술과 혁신, 기업 청렴성, 사회적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 **지속가능개발목표 16.** SDG 16은 반부패 정책을 국가별 개발 아젠다에 통합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회를 가져온다. SDG 16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나 건전한 정당, 의회, 반부패 기관, 사법부, 언론,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윤리와 청렴 인프라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각국이 투명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단순히 투명성을 중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이들의 책임회피를 바로잡음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기술과 혁신.** 빅데이터 분석학,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에는 부패 탐색·예측·예방·저지의 상당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신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패 위험을 인식하는 가운데, 차세대 반부패 프로그램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혁명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 **기업 청렴성.** 해외에 숨겨둔 불법 및 은닉자금에 대한 기자들의 탐사보도로 밝혀진 파나마 페이퍼스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문건은 정치인과 기업, 기타 다른 이익집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을 폭로했다. 이를 통하여 부패와 조직범죄, 자금세탁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드러났으며, 수익 소유권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금융 흐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부당 취득 자산 환수를 위한 효율적인 국제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 따라서 우리는 부패를 범죄나 개발의 장애물로서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청렴성 강화가 부패 척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공정한 기업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 **사회적 책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모든 부문의 선제적이고 폭넓은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이 부패 예방과 척결의 핵심이다.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공공·민간부문의 청렴과 윤리, 도덕 기준의 제도화에 필수적이다.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을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영향을 위해 정책 분야에서 성취한 진전의 결과물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원문기사: Ensuring sustainable solutions to combatting corruption (2019.12.6, UNDP)

베트남 법원, 모비폰 부패 스캔들로 전직 장관에 종신형 선고 (REUTERS, 2019.12.27)

베트남 법원은 국영 통신사인 모비폰이 TV 서비스 회사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한 대가로 3백만 달러의 금품을 받고 베트남 정부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 베트남 법원은 지난 토요일 국영 통신사인 모비폰의 미심쩍은 계약과 관련하여 3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 베트남公安부는 성명서를 내고 응우옌 박 손(Nguyen Bac Son) 전 장관이 손실을 보고 있는 유료 TV 서비스 회사 지분 95%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모비폰이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 성명서에 따르면 법원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재정 관리 부실과 뇌물 수수로 기소된 또 다른 전 정보통신부 장관 트루옹 민 투안 (Truong Minh Tuan)에게 14년형을 선고했다.
- 가입자 수 기준 베트남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모비폰은 2015년 말 ‘오디오 비주얼 글로벌 JSC’사의 지분을 약 8조9천만 동(4,100억 원)에 매입했다.
- 성명서에 따르면 문제의 거래는 베트남 정부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야기했다.
- 이번 모비폰 스캔들에 대한 조사는 베트남 정부의 뇌물근절 캠페인에 따라 지금까지 이행된 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수백 명의 정부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 베트남公安부 성명서에 따르면 ‘오디오 비주얼 글로벌 JSC’사의 팜 닛 부(Pham Nhat Vu) 회장은 손 전 장관과 투안 전 장관,

모비폰 임원 및 기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형이 선고받았다.

- 또한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1명의 다른 피고인들에게 2~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로이터의 질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모비폰 지분 매각 계획은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의 대표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으나, 그러한 계획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 베트남 정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 2020년 말까지 모비폰 지분 50%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원문기사 : Vietnam court sentences ex-minister to life in MobiFone corruption scandal (2019.12.27, REUTERS)

부패, 값비싼 ‘숨겨진’ 관세 (Global Trade, 2020.1.27)

관세 국경에서의 부패는 해마다 약 20억 달러(2조 4천억 원)의 세입 손실액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

- 관세, 수입한도, 제재는 모두 상업적 교류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심지어는 이를 가로막기도 하는 자유 무역의 공공연한 장애물이다. 그러나 모든 무역 장벽이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거래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
-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 및 저·중위 소득 국가에서는 부패가 국제 무역에 있어 가장 값비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에서 낮은 청렴성은 ‘숨겨진 관세’의 역할을 하며, 다른 모든 법적인 제재와 마찬가지로 무역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부패는 수익의 손실 또는 노골적인 강탈과 같은 직접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위험한 화물을 눈감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기도 한다. OECD에 따르면 부패가 일상화된 시장에서는 기업 매출의 5~10%에 이르는 추가적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종합해봤을 때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각국의 경제적 후생에 손해를 입힌다.
- 비공식적 금품 지급이 일상화된 시장에서는 기업 매출의 5~10% 상당의 비용이 ‘세금’처럼 추가된다.

뇌물을 통한 무역

- 많은 경우에 부담스러운 규제와 불투명한 관료주의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규제가 더 복잡할수록 준법 비용이 증가하며 복잡한 관료주의를 피해가기 위한 뇌물의 유혹이 커지고 부패가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정부가 수입 제한 및 다른 양적 제한을 유지할 경우 그 할당을 맞추기

위한 행정 절차 과정에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 무역에서 부패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피해를 입힌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재원이 소모된다. 부패는 또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부패한 제도 하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공정 경쟁을 왜곡한다. 그러한 경제 구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부패에 관련되고 싶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다.
- 부패 수준이 높으면 투자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업의 투자 의지가 저하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데, 적절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 구입이 힘들어지고 취업 기회도 줄어들며 세입 손실이 발생하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해마다 20억 달러(2조 4천억 원)의 세입액이 관세 국경 통과 과정에서 사라진다. - 세계은행 추산

국경 통과를 위한 기름칠

-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 국경에서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 손실액이 해마다 약 20억 달러(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 관세 행정기관들의 복잡한 규정과 감독 미흡, 이들이 가진 재량권 때문에 모든 관세단계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서류 작업을 대충 넘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대행사에서 돈을 찢어주는 행위이든 아니면 최고위급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부정행위의 형태이든 부패는 만연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J.W. 셰이버(J. W. Shaver) 세계 관세기구 전 사무총장은 ‘제도적인 부패를 낳는 오랜 전제조건들을 너무나도 쉽게 관세 행정의 일부로 제시하는 행정기관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관세 당국의

전반적인 부패가 드러났다. 수입업체들이 뇌물을 준 대가로 선적량을 축소신고하면서 고액의 수입세를 회피하여 수백만 달러의 세입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투명성과 책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당시 부통령 사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보다 덜 노골적이지만 똑같이 제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부패 사례도 있다. 대형마트 체인인 월마트는 최근 자사 공급망 내에서 뇌물 사건이 밝혀지면서 곤혹을 치렀다. 201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 멕시코 내 영업과 관련한 부패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의 징후를 고의로 간과한 사실에 대하여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다. 인도에서는 문제의 거래 중 다수가 건당 200달러(24만원) 미만의 소액이었지만 그 총계는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 월마트는 조사 종결 합의금으로 2억3천8백만 달러(2,800억 원)를 지급했다.

“오랜 제도적 부패의 전제조건들을 너무나도 쉽게 관세 행정의 일부로 제시하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 - 세계관세기구 전 사무총장 J.W. 셰이버

눈감아주면 발생하는 위험

- 공무원들이 수출업체의 부당행위를 눈감아 주게 되면 세입 손실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에 위험이 가해진다. 2015년 중국 텐진항에서 허위로 신고 되었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국의 조사결과 안전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화학물질이 물과 화학반응으로 폭발하는 종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잘못 붙인 라벨 때문에) 알지 못했던 소방관들이 불에 물을 뿌리면서 사건의 규모가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

- 지나친 정부 규제와 극복하기 힘든 비효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소위 ‘비공식 비용 지불’이 실질적으로 도움 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자꾸 뇌물을 주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제도적 유혹을 영영 제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문제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무역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정과 규제를 피하고 안전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대응해야 한다.
- OECD는 여러 가지 접근방식의 조합을 바람직한 대응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세 행정과 국경 통제에 존재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뇌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자사의 국제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영업 관행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OECD는 무역 협정에 투명성과 반부패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과 국경을 넘어서

- 부패로 인하여 개인의 상거래에 발생하는 숨겨진 관세는 수치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패가 오랜 시간동안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면서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지 그 범위는 측정하기가 힘들다.
-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 시장과 무역 확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정당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수백만 전 세계 시민들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is a Costly "Hidden" Tariff (2020.1.27, Global Trade)

2 국제회의 동향

1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0.2(수)~4(금),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참석자 : 46개 당사국, 5개 옵저버 국가 등 총 51개국 230명 참석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5명 참석 참석

2. 주요 논의내용

- 일반토론에서는 총 13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 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
 - ※ 권익위 위원장은 국제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2020년 IACC 개최와 병행 개최될 IACA 당사국 총회를 언급하고, 양 회의의 참석 요청 등의 내용으로 발표
- IACA 재정 관련, 학장대리와 이사장은 현재 위기는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이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으며, 당사국들의 정기적인 기여를 약속해 줄 것을 요청
- 이사회는 향후 1-2년간 IACA 재정, 운영과 관련한 전략방향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채택한 바, 이에 대해 총회에 보고하면서, 동 내용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
- 총회는 ① 일반사항에 관한 결의안(말레이시아 제안), ② 2020 예산안 결의안, ③ 누르술탄 선언문(카자흐스탄 제안), ④ 제9차 당사국총회 의제 및 개최 결의안(서울 개최)을 승인

3. 위원회 주요 활동

-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020년에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반부패컨퍼런스(IACC) 개최와 병행하여 IACA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게 된 바, 두 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
-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신고자보호 워크숍에서 위원장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와 운영의 우수성에 대해 참석한 당사국 대표들에게 소개



<기조연설>



<워크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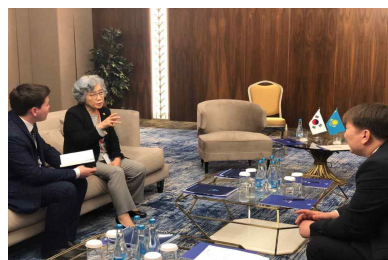


<참석자 기념촬영>

- 카자흐스탄 반부패청장과 2차례 면담으로 양국 협력관계 출발



<1차 청장 면담>



<청렴국장 면담>



<2차 청장 면담>

- 이사회 임원 및 MOU체결·정책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협력 유지 의사를 밝힘



<이사회 임원들과 인사>



<사무국 학장대리와 면담>



<쿠웨이트 반부패청장과 환담>

② 2019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및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1. 회의 개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9. 10. 7.(월)~9.(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9. 10. 8.(화)~10.(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 G20 회원국,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30여 명
-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임한나 서기관, 문소희 사무관, 법무부·외교부 관계자 등 6명

2. 주요 논의내용

- 지난 5월 개최된 제2차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에서 고위급 원칙 및 정상선언문 협의를 위해 논의가 순연되었던 의제들이 이번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됨
 - 주요 논의 의제 : 2019년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 초안, 이해충돌 방지 우수사례 가이드 모음집 초안, 경제범죄 및 부패 관련 자산회복에 대한 국제적 협력 초안 등
- 대표단은 G20/OECD 합동세션 계기에 한국의 부패 및 공익침해 분야 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하며 동 제도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익 침해 여부에 따라 민간영역에 대한 고발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함
- 반부패실무그룹 본 회의 및 부대행사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던 경제사범 소환 및 자산회복과 관련하여 국제적 사법공조(MLA)와 정보 공개(open data) 시스템의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

- '20년도 제1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20년 2.3-6(4일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는 6월 15-17일간, 제3차 회의는 10월 20-21일 개최 후 10월 22일 반부패 장관회의 개최될 예정임(잠정)
- 반부패실무그룹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① 민영화에 대한 청렴 제고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 ② 국가적 반부패 정책 또는 전략 개발 및 이행, ③ 기술을 활용한 청렴도 증진 방안
- 또한 G20 반부패실무그룹 창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0년에 반부패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반부패 법 집행관련 부처 (anti-corruption laws enforcers)에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함

3 2019년 제2차 청렴작업반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1. 4.(월)~5.(화)/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약 30여 개국 대표단, 참관국(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 등 총 50여 명
- * 우리측 : 권익위 문소희 사무관,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서관 등 3명

2. 주요 논의내용

- OECD 청렴작업반은 2017년 마련된 OECD 청렴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선언적이고 축약적인 권고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각 권고별 핸드북 제작 중
- * OECD 청렴작업반(SPIO)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을 이행해야하며, 핸드북은 자체적으로 청렴권고안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게 됨
- 이번 회의에서는 각 권고안의 핸드북 초안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동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이 2020 OECD 청렴주간회의(Integrity Week) 때 발표될 예정
- 총 13개 권고에 대한 각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유되었고, 한국은 권고3번(전략) 부문에 대하여 성숙도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 향후 일정 : 2020.3.25.-26 OECD 청렴주간 중 청렴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청렴작업반회의는 청렴포럼과 연계하여 3.24에 개최될 예정

4 제16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1.17(수)~21(금), 터키 이스탄불
- 출장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담당자 등 4명

2. 주요 논의내용

□ AOA 이사 선출을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15년 이후 중단된 AOA 임원직 재획득을 통해 옴부즈만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 확인
 - ※ 11월 13일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선거에서도 박은정 위원장이 지역이사로 당선, 두 개의 대표 옴부즈만 국제 회의체에서 동시에 이사 선출
- AOA 이사(총6명)의 신규 회원가입, 예산배분, 규정 개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통해 44개의 아시아 옴부즈만 회원기관이 속한 협회의 의사 결정 주도
 - 아시아 내 옴부즈만 개념의 올바른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 주도적 참여 예정
 - 향후 한국 지방 옴부즈만들의 AOA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노력 필요
 - ※ 현재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들의 발전 도모 차원에서 AOA·IOI 가입 권고

□ 권익위 옴부즈만 시책의 우수성 전파 및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 '행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옴부즈만 역할(국민소통 제도화·극대화 관점에서)' 주제 하 컨퍼런스 발표 통해, 권익위의 우수한 옴부즈만 시책 소개
 -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동신문고' 등을 활용한 국민소통 ·

정책환류 기능의 적극적 수행에 대해 다수 해외 옴부즈만 긍정적인 반응

※ 카타르, 이란, 홍콩, 베트남, 태국 등의 옴부즈만 기관에서 적극적 관심을 표명,
권익위는 위 기관들에 동 발표 관련 자료 제공

- 향후 AOA 이사 활동 등 국제 활동을 통해 권익위의 선진 옴부즈만 시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 홍보 필요

□ 옴부즈만·반부패 기능 병행 기관들 간의 별도 협력 증진

- 권익위와 같이 옴부즈만과 반부패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중국 국가감찰 위원회 및 이란 감찰원의 권익위에 대한 관심 확인*
 - ※ 이들 기관에서 권익위에 면담 요청 및 향후 긴밀한 협력 등 제안
- 이들 기관은 권익위 옴부즈만·반부패 시책들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권익위와의 교류 내지 정책 전수를 희망
- AOA 내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별도 협력을 통해 상호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5 2019년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1. 회의 개요

- 주최 : ADB, OECD 사무국 및 베트남 감찰원(GIV)
- 참석자 :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원국 대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관계자(ADB, OECD, UNDP, TI 등), 한국대표단
-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상임위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조달청 관계자 등 10명

(제3차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 일시/장소 : '19. 12. 4.(수) - 6.(금)/하노이, 베트남

(제23차 조정그룹회의)

- 일시/장소 : '19. 12. 5.(목)/하노이, 베트남

2. 주요 논의내용

- 제10차 ADB 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지역 컨퍼런스는 베트남 감찰원의 주최로 하노이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2017년 제9차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컨퍼런스('17.11월, 서울) 이후 역내에서 개최된 첫 컨퍼런스로, '아태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부패 방지 및 척결(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s in Asia-Pacific)'을 주제로 제3차 공공청렴 네트워크(Public Integrity Network)회의, 제23차 조정그룹회의, 고위급 세션 등이 진행됨
- 최근 아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인프라 프로젝트관련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과 toolkit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 ADB와 OECD는 각각 PIR(Proactive Integrity Review)과 청렴권고안

등 체계적인 toolkit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G20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제작한 ‘인프라 개발 청렴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모음집’ 등 또한 활용가능한 중요한 자료로서 언급

-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감사 또는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이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대중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위원회 김의환 상임위원은 아태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부패예방에 대한 고위급 세션에서 아태지역 부패방지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을 소개
-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부패 척결을 위해 이루어온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참고할 것을 언급
- 또한 조달청은 인프라 투자 펀드의 위험성 낮추기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인프라 프로젝트 착수 초기단계에서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와 공개경쟁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절감하고 있음을 소개

6 2019년 제4차 뇌물방지작업반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12. 9.(월)~13(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UNODC(유엔마약 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00여 명
-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주오이시디대표부 담당자 등 4명

2. 주요 논의내용

- 우리나라 4단계 심사 후속조치 발표
 - 우리측은 자연인과 법인의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법인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에 대해 감청(wiretapping) 수사가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
- '19.10월 시행한 그리스에 대한 3단계 현장실사 결과 논의
 - 그리스의 이행 주 점검국으로서 10월 현장실사에 참여한 우리측은 실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그리스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 해외뇌물 제공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점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
 - 동 법이 통과되어도 소급효 금지(제2조) 조항에 의해 범죄 후 판결 시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관대한 법이 적용되는 점, 벌금형의 금액 감소(150,000유로 → 36,000유로)등 지적
- 호주의 4단계 심사 후속 서면 평가
 - 호주의 이행 주 점검국인 우리나라는 호주가 해외뇌물 제공 관련 법인에

책임을 묻는 법안(CLACCC :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Combatting Corporate Crime)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등 의견 개진

- 호주의 경우 총 13개 권고 중 완전 이행 6개, 부분 이행 3개, 불이행 4개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음

○ 해외뇌물방지법 수사사건 공유

- 남아공,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3개국의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수사사건의 진행 상황 보고가 이루어짐.
- 차기(내년3월) 회의 시 우리나라도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 보고(연1회 실시) 예정

○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임명

- 현 뇌물방지작업반 의장(Drago Kos, 슬로베니아)의 연임 문제에 대해 헝가리는 동 인사에 대한 결격사유로 인해 본국이 불수용한다는 이유로 연임을 강력히 반대
- 사무국은 헝가리 본국과 OECD 사무국간 고위급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차기 의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인사의 의장직 지위가 그대로 연장된다고 언급

7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12. 16.(월)~20(금)/UAE 아부다비 국제회의장
- 주관기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AE 정부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56개 당사국 정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대표 등 1,200여명
-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오스트리아국제기구대표부 관계자 등

2. 주요 결과

- 위원장은 12월 16일(월) 정부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1주기 이행점검 이후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 관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과, 2020년 6월 개최 예정인 국제반부패회의 및 국제 반부패회의 당사국 총회 개최를 소개하면서,
 -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동 회의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소통이 장이 될 것이며, 참석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함
- 지역대표 및 각국 정부대표들은 2021년 상반기에 열릴 UN 반부패 특별총회 개최를 환영하였고, 동 총회에서 채택될 각국 정상 간의 정치적 선언문 채택을 위해 준비 일정과, 선언문에 포함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음
 - 또한, 부패예방, 자산회복, 국제협력, 기술지원 등 분야에서 법제 개선 등 협약 이행 노력과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음
 - NGO측은 이행점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또 UN반부패특별총회에 정치부패, 불처벌, 젠더이슈 등이

의제가 포함되기를 희망

- 12월 20일(금) 당사국 총회는 ① 자산회복 국제협력 강화 및 동결·압류·몰수 자산의 관리, ② 공공부문 청렴성 촉진, 부패로부터 스포츠 보호, ③UN 반부패특별총회, ④ 부패척결에서 반부패기관의 효과성 제고, ⑤ 부패 측정, 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조장하는 부패 예방 및 척결, ⑦ 감사기구와 반부패기구 간 협력 제고에 대한 아부다비 선언문, ⑧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제 2 주기 연장 등 10개 이상이 채택됨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공정성 주간' 오늘 시작 (IOI, 2019.10.8)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정성 주간'을 지정하였다.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공정성 주간 개시 선언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옴부즈만 '공정성을 위한 자주적 목소리'는 대중에게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상기시켰다.
- 제이 초크(Jay Chalke) 옴부즈만은 '우리 모두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속해있는 공동체에서든 매일 공공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주정부, 지방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공정한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관할하는 수백 개의 공공부문 기관에 대하여 해마다 7천에서 8천 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공공기관과의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기관과 각 지방정부, 보건 당국, 학교와 대학, ICBC나 BC하이드로와 같은 왕립 기업, 근로자 보상 위원회 같은 위원회 등 광범위한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실은 공공 서비스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방성, 공정성, 비밀유지에 근거하여 각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들에게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초크 옴부즈만은 ‘우리의 메시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시민 여러분이 책임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오라는 것이다. 한 명의 목소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해결과 옴부즈만과의 직접 상담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10월 11일 이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빅토리아시 포트가 947번지에서 열리는 옴부즈만 공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bcombudsperson.ca에 공개되어 있다.

※ 출처: IOI “Fairness Week” kicks off today in British Columbia’ (IOI 홈페이지>News, 2019.10.8.)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조사 결과 나이아가라 지역 최고행정책임자
채용에 ‘내부자 부정행위’ 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IOI, 2019.11.29)

온타리오 옴부즈만은 최고행정책임자의 채용 전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후 채용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1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옴부즈만,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 16개 제시
- 카르멘 디안젤로(Carmen D'Angelo) 전 최고행정책임자의 채용에 전 지방의회 의장실의 관계자들이 유출한 기밀 정보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따라 폴 두브(Paul Dube)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은 오늘 나이아가라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 두브 옴부즈만은 ‘내부자 부정행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나이아가라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최고행정책임자 채용 절차에 있어 후보자에게 기밀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한 내부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문제의 후보자가 그 결과로 채용되어 해당 지방의 가장 고위 행정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만 조사 결과 디안젤로는 채용 전과 채용 중에 기밀문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채용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자들의 성명 및 이력, 면접 질문과 그에 대한 모범답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의 문서 중 일부는 당시 지방의회 의장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장실 소속 직원이 공식 채용위원회의 일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안젤로의 지원 과정을 돕고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옴부즈만은 보고서를 통하여 ‘디안젤로는 일반인이나 다른 후보자들은 얻을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내부자들로부터 채용 지원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채용 절차에서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은 지역 내에서 논란과 불신을 불러왔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16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는 만장일치로 옴부즈만의 권고안 전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두브 옴부즈만은 최고행정책임자의 채용 관련 민원 113건이 접수된 이후 2018년 8월 13일 조사를 시작하였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의 수는 총 171건이었다. 조사는 2016년 최고행정 책임자 채용절차, 2017년 최고행정책임자직 계약 수정 및 연장, 그리고 지방 옴부즈만 및 외부 거버넌스 감사관의 임명 등 2018년 채용과 관련된 시민의 우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옴부즈만 조사관들은 인터뷰를 46회 실시하고 디지털 문서 수천 건을 검토했다. 또한, 옴부즈만은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유출된 문서가 조작되거나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컴퓨터 과학수사(포렌식) 전문지식으로 높이 평가되는 감사업체와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한 의심을 증명할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2016년 가을 나이아가라 지방에 채용되기 이전에 디안젤로가 일했던 나이아가라 반도 보존청에서 회수한 디지털 파일들을 살펴보면, 디안젤로가 '최고행정책임자 최단 경로'라는 엑셀 파일을 생성했던 2015년 12월부터 이미 당시 해당 지방정부 최고행정책임자의 교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엑셀 파일에는 지방의회에서 당시 최고행정책임자의 해고를 시도할 1개월 후의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신임 최고행정책임자의 채용 일정 역시 언급되어 있었다. 채용 절차 이전에 그리고 절차 중에 디안젤로는 지역 당국 내부자들의 도움으로 기밀 정보를 포함한 문서 8개를 나이아가라 반도 보존청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았다.

- 최고행정책임자로 임명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당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디안젤로의 채용 계약을 3년 연장했으며,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모든 계약 종료 36개월 이전에 통보를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계약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계약의 유효성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으나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나이아가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절차를 통제하기 위한 내규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 세인트 캐서린스 스탠다드지가 디안젤로의 채용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2018년 4월 처음 내보내면서 최고행정책임자 채용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 정부는 외부 거버넌스 감사관에 이어 지역 옴부즈만을 임명함으로써 해당 사건 관련 폭로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 옴부즈만은 기밀 정보가 디안젤로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며, 감사관들은 자신의 권한 이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의회는 온타리오주(州)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 두브 옴부즈만은 나이아가라 지방이 지역 옴부즈만을 위하여 분명한 참조 기준을 정하지 못했던 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할 때 감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이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두브 옴부즈만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종류의 조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모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채용 절차에 있어서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권고했다.
 - ▶ 기밀 정보 보호를 명시하는 직원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 ▶ 개인 이메일 사용 및 회사 기록 보유에 대한 직원 교육
 - ▶ 지방 의회와 최고행정책임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규
 - ▶ 최고행정책임자 채용 절차를 명시하는 정책

▶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조사를 위한 분명한 참조 규정

- 옴부즈만의 모든 권고안의 수용과 더불어 나이아가라 지방정부는 권고안의 이행 상태를 6개월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실에도 보고하기로 했다.
- 두브 옴부즈만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옴부즈만 권고안을 이행함으로써 나이아가라 지방정부가 최고행정책임자 채용 절차 과정에서 잃었던 시민의 신뢰를 일부 회복하고 향후 행정 관행과 정책 모두에서 더 나은 지역 거버넌스의 책임성과 투명성, 청렴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브 옴부즈만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옴부즈만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 이번 조사는 2016년 1월 1일자로 옴부즈만의 임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적인 감독이 포함된 이후 실시된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사였으며, 나이아가라 지방 관련 조사로서는 두 번째였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하여 1만 2천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었다.
-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은 온타리오주 입법부 소속의 독립 기구로 주정부당국, 기관, 공기업, 이사회, 위원회, 법원, 아동보호서비스, 프랑스어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교 이사회 모두를 포함하여 1천개 이상의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선출직 공직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공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2018~2019년에 27,419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옴부즈만 권고안은 대부분의 경우 수용되고 있다.

※ 출처: ONTARIO: Ombudsman finds Niagara CAO hiring was ‘inside job’ (2019.11.29., TIMMINS TODAY)

캐나다: 토론토시, 위험한 개 처리 방법 개선 (IOI, 2019.12.18)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동물 서비스부에 위험한 개 처리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 담당자 지정 등 민원 처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8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 가족에게 위험한 개에 대한 민원 처리 방식 개선의 공을 돌렸다. 수전 오픈리(Susan Opler) 옴부즈만은 이 가족이 토론토시 허가·기준 분과 산하의 토론토 동물 서비스에 제기한 민원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 이 가족 문제는 7살 아들이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에게 물리면서 시작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앞뜰에서 개에 물린 사건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으며 그 일로 아들이 그곳에서 노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전 오픈리 옴부즈만은 ‘피해 가족과 문제의 개들, 견주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물 서비스부가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모든 당사자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 토론토시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동물 서비스부의 조사결과와 그에 대한 불복, 그 이후 피해 가족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 시 직원들은 어떤 개가 아이를 물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견주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 당국은 피해 가족이 아이를 문 개가 아니라고 주장한 개에 대하여 평생 동안 집 밖으로 나갈 때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 조치 명령을 발부했다.
 - ▶ 피해 가족은 견주가 입마개 착용 명령 변경에 불복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 ▶ 동물 서비스부는 불복 재판에서 개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 ▶ 법원에서 문제의 개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아무도 피해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 ▶ 법원은 처음에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제시된 증거를 보면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요인들을 판결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피해 가족은 사건 관련 문서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의 자유 요청을 접수해야 했다.
- 조사 과정에서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위험한 개에 대한 민원에 대처하는 시 당국의 대응방식에 있어서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 8개를 제시하였으며, 토론토시 동물 서비스부는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다.
- ▶ 위험한 개 관련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담당하는 새로운 독립·공개 재판소 설립 (2019년 5월부터 실제 운영 중)
 - ▶ 시 당국에서 개의 공격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
 - ▶ 모든 사나운 개에 대한 명령 발부와 이에 대한 모든 불복 재판 결과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지정
 -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전적인 사과
-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동물 서비스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는 끈기를 보여준 피해자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플러 옴부즈만은 ‘한 가족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 사나운 개 신고에 대한 토론토 시 당국의 대처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더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출처: CANADA ‘City of Toronto improves how it handles dangerous dogs’
(IOI 홈페이지>News, 2019.12.18.)

유럽연합: 유럽의회, 에밀리 오라일리 현 유럽 옴부즈만 재선임 (IOI, 2019.12.18)

유럽의회는 에밀리 오라일리 현 유럽 옴부즈만을 향후 5년간 유럽연합 기관 관련 민원 조사를 담당할 유럽 옴부즈만에 재선임하였다.



- 에밀리 오라일리(Emily O'Reilly) 현 유럽 옴부즈만이 유럽의회에서 재선임되면서 향후 5년간 유럽연합 기관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게 됐다.
- 에밀리 오라일리 옴부즈만은 2019년 12월 18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비밀 투표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의 600표 중 320표를 얻으면서 재선임되었다.
- 오라일리 옴부즈만은 기자와 방송인 출신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유럽 옴부즈만직을 수행해 왔다. 그 이전에는 아일랜드의 첫 여성 옴부즈만이었으며 2007년부터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환경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 유럽의회는 12월 3일 공청회를 열고 후보자 5명에게 자신이 선출된다면 공정성과 가시성, 투명성을 통하여 EU 옴부즈만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이번 투표를 실시했다.

유럽 옴부즈만에 대해

- 유럽의회에서는 매 회기가 시작될 때 5년 임기의 옴부즈만을 선출한다.
- 유럽 옴부즈만은 유럽 각국 시민들과 유럽연합 주민, 유럽연합 소재 기관들로부터 유럽연합 기관 또는 기타 유럽연합 기구의 부당행위, 차별, 불필요한 지연과 불분명한 절차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유럽 옴부즈만실은 자체 계획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며, 해마다 유럽의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 출처: EU 'Parliament re-elects Emily O'Reilly as European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019.12.18.)

영국: 심장 기형 영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IOI, 2019.12.19)

영국 보건서비스 옴부즈만은 6개월 된 영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의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병원에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보상금 1만 5천 파운드(2,300만원)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다.

-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제임스 파제트 대학병원 (James Paget University Hospitals)의 국민보건서비스 재단에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된 영아의 심장 기형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하여 아기가 사망한 사건에서 다수의 심각한 과실이 드러났다.
- 2015년 11월 2일, 아기 해리스 제임스(Harris James)의 주치의는 아기가 위염을 앓은 이후 체중 감소가 나타나자 아기를 제임스 파제트 대학병원의 국민보건서비스 재단에 위탁했다. 주치의의 진료 의뢰서에는 아기의 갈비뼈 아랫부분이 아래로 폭 꺼져있다는 증상이 적혀 있었으나 재단의 의료 기록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에서 혈액과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영양사와의 면담이 4주 뒤로 잡혔다.
- 그로부터 1주일 남짓 흐른 후인 11월 12일에 아기는 구토 이후 몸이 축 늘어져서 구급차를 타고 해당 재단의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의 일부에 액체가 고여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심전도 검사 결과 아기의 심장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단은 폐렴을 의심하여 해리스에게 산소호흡기와 항생제, 수액 치료를 처방했으나 의료진은 아기의 심장 문제에 대하여 전문의의 소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 아기 해리스가 아직 영아이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리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심장마비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 로스토프트(Lowestoft)시 공무원인 아기의 어머니 매리 건스(Mary Gunns)씨는 아들의 사망에 대한 재단 측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병원은 아기 해리스의 과거 병력과 증상, 그리고 폐렴 치료가 효과가 없음을 고려했을 때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심장 문제를 제대로 진단 및 치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롭 베렌스(Rob Behrens)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실수가 발행했을 때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 ‘재단 측이 이러한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기 해리스의 부모인 매리와 라이언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아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였고, 아이가 갑자기 잘못되면서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 ‘우리는 제임스 파제트 병원의 과실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민원에 병원이 잘못 대처함으로써 발생한 불필요한 고통을 잊을 수 없다’.
-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에 따라 재단 측이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제임스 파제트 대학병원 국민보건서비스 재단 최고책임자인 안나 힐스(Anna Hills)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 ‘우리는 아기 해리스의 가족에게 임상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던 우리의 과실과 아기 사망에 대한 민원을 제기되었을 때 가족과 연락하고 대응했던 방식을 사과했다’.

-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의 지원과 지도하에 우리 기관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검토했다’.
-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와 치료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상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잃은 부모, 친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공감과 세심함, 존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 ‘다시 한 번 아이를 잃은 가족에게 재단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 재단 측은 옴부즈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과실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병원은 건스씨에게 공식 사과하고 병원 측의 과실로 야기된 부당함에 대한 보상으로 1만5천 파운드(2,3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출처: UK ‘Baby’s death from heart defect was avoidable’ (IOI 홈페이지>News, 2019.12.19.)

4

참고 자료

1.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관련 참고자료

- 전 세계 190개국이 가입한 UN반부패협약은 부패예방, 부패범죄 규정, 사법공조, 자산회복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국제적인 규범으로, 협약 가입국들의 협약상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UNODC(UN마약 범죄국, UN반부패협약사무국 역할)에서는 다양한 조항별 참고자료를 발간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하며, 동 내용에 대한 전문 번역은 예산상 불가하여, 목차와 서문내용 요약을 첨부하니,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5조) 국가 반부패 전략: 개발과 이행을 위한 실행 가이드

※ 출처 : National Anti Corruption Strategies: A Practical Guide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2015, UNODC)

- 본 가이드는 국가 반부패 전략을 처음 작성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가 공식적인 국가 반부패 전략 문서의 작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권고사항 중 다수는 또한 공식 전략 채택 없이 제 5조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본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국가 반부패 전략 문서의 5개 핵심 측면에 대해 분석한다.
 1.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지원을 확보한 기관이 전략 작성 과정을 감독해야 하고 정부 내·외부 모두의 핵심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2.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이행에 대한 장애물 등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주된 부정부패 관련 도전과제의 1차적 평가와 진단이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진단에는 또한 문제에 대한 현재의 지식 혹은 이해에 있어 존재하는 간극이나 한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 반부패 전략은 앞서 말한 1차적 평가 및 진단에 근거하여 대담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반부패 정책을 포함해야 하고 장·단기 최우선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개혁의 적절한 순서를 정립해야 한다.
 4. 국가 반부패 전략에는 그 이행의 감독 책임을 조정 부서에 배정하는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략의 서로 다른 부분을 실행하는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5. 전략에는 그 이행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 계획의 각 요소가 적절히 실행되고 목표로 한 효과를 발휘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국가 반부패 전략 작성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의 예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로 반부패 전략은 국가 지도자가 이를 이행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단순한 기술관료적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 반부패 전략을 작성하고 공표하는 목적 중 하나는 효과적인 반부패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력과 시민적 요구, 광범위한 지지를 촉발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단순히 건전하고 합리적인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국가 반부패 전략 문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작성 절차와 공표 이후의 실질적 이행 및 필요시 개정까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내외 관계자들의 주인의식과 헌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국내외 시민들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 두 번째로, 본 가이드의 주된 주제는 그 작성자들이 원대한 목표와 현실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서 달성하기 쉬운 정책 변화만 제안하는 전략은 국가의 가장 긴급한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부패 예방 및 근절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위기와 집중력, 압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국가의 재원과 역량에 비추어 봤을 때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원대한 목표들을 제시하는 비현실적인 전략은 실용성 없는 이름뿐인 전략으로서 간과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 좌절감과 무관심을 오히려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다.
- 원대한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를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국가 반부패 전략 개발 관련 책임자 모두가 전략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제11조를 위한 이행 가이드 및 평가 체계

※ 출처 : Implementation Guide and Evaluative Framework for Article 11 (2015, UNODC)

- 제11조는 부패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자체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그 구성원이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 11조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1)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2) 사법부 구성원 사이의 부정부패 가능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판사 행동강령이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11조는 사법부 소속은 아니지만 사법부와 유사한 독립 권한을 발휘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검찰 기능이 정부의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검찰 업무의 책임성 역시 협약 제 7조 1항과 4항 및 제 8조의 적용 하에 보장될 수 있다.

가이드의 구조

- 본 가이드는 제11조의 핵심 요건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 첫째, 사법부 구성원 사이의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실제 실행되었을 때 사법부 구성원의 부패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주된 책임은 사법부 자체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법조계와 언론, 학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그러한 책임은 한편으로는 사법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행정 및 입법 당국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사법부는 부패 가능성 근절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사안 규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행정 및 입법 당국은 부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사법부가 운영되는 청렴성 제도 체계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제 11조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입법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당사국들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과 부패 근절에 있어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더 자세히는, 제 11조는 당사국이 자국 법 체계의 근본 원칙에 근거하여 실행하는 조치들이 사법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본 가이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청렴성의 기본 원칙과 사법 독립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③ (제12조)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위한 자원 가이드

※ 출처 : Resource Guide on State Measures for Strengthening Corporate Integrity (2013, UNODC)

개요

- 민간부문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근거한 각국의 부패 근절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 기업들이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패에 연루되곤 하지만, 민간부문은 국제 반부패 지형을 바꾸고 있는 기업 청렴성 개혁을 진전시키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가이드의 목적

- 본 가이드는 기업* 청렴성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 번째 부분은 국가와 민간부문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협약 조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에는 뇌물과 다른 부패 행위의 불법화를 의무화하는 규정들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특정 조치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부분은 특히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 청렴성의 원동력이 되는 다른 요소들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부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분석한다. 이 부분에서는 또한 부패 척결 결과 관련된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

* 본 가이드는 '기업'(corporation), '회사'(company), 그리고 '민간기업'(private enterprise)라는 용어를 서로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이란 각 지방의 소규모 가족사업장으로부터 국영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기관 등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주체를 모두 포함한다.

- 본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민간부문의 부패 예방과 해결을 위한 유엔반부패협약 목표의 개발과 진전에 기여한 다양한 제재 및 장려책들을 설명한다.

민간부문의 환경

- 협약에는 다양한 부패 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정부패는 때때로 ‘사적 이득을 위하여 주어진 힘을 남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는 허위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재정 보고, 조달 사기, 횡령 및 특히 뇌물 등이 포함된다. 기업 환경에는 뇌물 문제가 만연해 있으며, 기업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각국의 다양한 크고 작은 회사들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 부패는 정부나 기업들이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회사는 부패 자금의 흔한 출처이기도 하지만 착취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패 개혁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지역 기업들은 부패한 공직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특히 취약하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뇌물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국내 및 국제 기업들 역시 비윤리적인 다른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우려가 발생한다. 각국은 반부패 노력에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방에 초점

-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기업의 부패 근절은 위법행위의 예방 및 탐지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 프로그램 또는 윤리 기준 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준법’ 혹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이전 지침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윤리적 기업 관행과 인식 제고 교육, 반부패 정책과 절차, 도움을 청하고 의혹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체계와 관리 등을 위한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의 이행은 1차적으로 민간

부문의 기능 및 책임이다. 반부패 조치는 투자나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 투자와 같이 이들은 위험과 이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른 요구사항과 경쟁하게 된다. 각국은 강제적 제재와 건전한 관행에 주어지는 장려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이 반부패 조치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건전 관행 장려책’이란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또는 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다양한 형식으로 협력한 대가로 기관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려책의 형태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처벌 완화’로 알려져 있으며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에 투자한 기업에게 국가조달 상 혜택을 주는 등 법 위반이나 집행 조치와는 무관한 형태의 보상도 있다. 이들 모두 부정적 의미의 강제 제재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 건전 관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유인책이다.

일반 원칙

- 본 가이드는 당사국들에게 민간부문 청렴성 장려를 위한 제재와 장려책의 적절한 조합을 확인하고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기업 예방 관행 벤치마킹에 있어 최근의 상당한 진전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 부패 척결 노력의 현재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 당사국들은 민간부문의 부패와 관련된 유엔당사국협약의 약속 이행에 있어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억제력 있는’ 제재 등을 포함하여 특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당사국들은 제재와 장려책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보조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본 가이드의 권고사항은 핵심 이행 원칙 5개를 반영하고 있다.
 1. 기업 청렴성 강화는 유엔반부패협약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2.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주요한 도구이며 따라서 장려되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제재와 장려책 사이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민간부문 관행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4. 기업 제재는 필수 요건으로서, 반부패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전적 제재와 형사 처벌 모두 포함해야 한다.
 5. 그러나 제재는 건전 관행을 보상하는 장려책과의 조합을 통해 적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 본 가이드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없으며 각국의 기존 법 체계와 제도 및 자원 역량, 제한 조건 등 현재 상황에 기반하여 다양한 강제 제재 및 건전 관행을 적절히 조합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사업별 혹은 부문별 청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렴성 조약 및 기업 강령 등의 다른 조치들도 특히 부패행위의 적발이나 고발 가능성이 낮은 전통적 집행 관행을 보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 관행

-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억제력 있는’ 제재는 유엔반부패협약의 기본 요건으로서,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업 환경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범법행위를 처벌하고 부패로부터의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며 기업 내 예방 관행 강화 조치를 장려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고 억제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균형은 기업의 규모, 위법행위의 심각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이 있다.

- 당사국들은 민간부문 부패 제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략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이 목표로 하는 ‘제재’에는 배상과 자산 몰수, 기타 형사 제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협약 상 의무사항이고, 다른 일부는 권고사항으로 분류된다.
- **벌금.** 벌금은 민간부문 반부패 범죄행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제재조치로서,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벌금은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향후 피고인 및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징역.** 징역형은 부패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제재로서, 특히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불법 자산의 압수.** 부패를 통하여 부당 이익의 압수는 불공정한 축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취득자로부터 부패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것은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기업이 뇌물사건에 연루될 유인을 제거하며 경쟁 기업들이 더 공정한 경제적 경쟁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을 통한 해결 .** 기업의 청렴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는 데 계약 취소나 반환이 이용될 수 있다. 공공 계약에 있어서 계약 수주나 사업의 유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패를 저지른 기업은 공공의 이익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 **금지.** 보류나 금지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정부 계약 활동에 입찰이나 참여를 금지하는 더 과감한 형태의 계약적 제재이다. 이러한 금지의 가능성은 유리한 거래를 얻어내거나 합의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혜택의 박탈.** 부패행위를 저지른 개인 혹은 기업은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혹은 수출 신용 지원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부의 서비스나 혜택 이용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의 제한과 부패 사이의 연관성은 특히 국가 수출 신용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적 기업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피해 발생에 대한 민사배상책임 역시 반부패협약 요건에 포함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의 일반적 계약 또는 불법행위법, 부패에 특정된 개인의 소송권 등을 통하여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본질적으로 교정의 성격이 있으며, 경쟁사나 국가 등 부패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범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이미지 손상.**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부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기업 이미지의 손상이다. 사실상의 ‘제재’는 아닐지라도 국가는 범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청렴성을 장려할 수 있다.
- 다양한 제재를 조합하여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고, 다수 국가는 법집행기관의 재량권에 근거하여 8종류의 제재 모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각국의 법적 원칙과 기존의 규정적 관행 및 기준뿐만 아니라 특정 조치의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기업의 건전한 관행을 보상하는 장려책은 법 집행을 통한 제재의 중요한 보충 수단이다. 이러한 장려책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 이상으로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한 의미 있는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주어진다. 이 분야의 국가적 관행은 법 집행을 통한 제재보다 천천히 발전해 왔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장려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처벌 완화.** 처벌 완화는 주로 범법행위의 자진 신고를 장려하고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가장 흔히 적용되는 형태의 장려책이다. 이는 처벌이나 혐의의 경감을 통하여 가능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회사가 직원이나 대리인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어지는 법적인 처벌 완화는 기타 중요한 유엔반부패협약 목표의 저해를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직원, 대리인, 사업 파트너가 저지른 부패 범죄의 예방과 포착을 위하여 기업이 행한 선의의 노력은 처벌 조치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부당 이득의 압수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소송에 방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정부 조달.** 관련 혜택 기업을 위한 두 번째 장려책은 입찰자 적격 심사 조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나 입찰 경쟁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모범 관행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에게 정부 조달 입찰에 있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렴성과 신뢰도를 근거로 조달 절차에서 혜택을 주는 관행은 민간부문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 **정부 혜택에 대한 권리.** 최소한의 청렴성 관행을 시행하는 기업에게만 조건부로 정부 지원 또는 서비스의 이용 권리를 제공하거나,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그러한 권한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한 정부 혜택 박탈이라는 제재에 대응되는 제재 조치이며, 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노력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장려책.** 기업의 건전한 관행 실천과 부패 근절 노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기업 청렴성을 장려할 수도 있다.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제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려책은 대부분 비정부 영역에서 건전한 관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장려책이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을 공개적으로 장려할 수도 있다.

- 건전한 관행을 보상하는 장려책은 범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조치의 대체물은 아니지만 기업의 자진신고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발각되어 처벌받을 위험이 너무나 작아서 처벌 완화 장려책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보충적 역할이 기업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 예방 노력에 대해서만 장려책이 허용되고 이러한 혜택이 너무 쉽게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혜택이 지나치게 쉽게 주어지면 유엔반부패협약의 청렴성 목표와 법 집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